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16년도 영주시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차 변		대 변	
비 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
7,139,976천원	1,644,494천원	8,784,470천원	0천원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차 변	대 변	
자 산	부 채	자 본
70,300,423천원	2,030,000천원	68,270,423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Ⅰ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1,700,494천원
Ⅱ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-14,039,403천원
Ⅲ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10,678,179천원
Ⅳ. 현금의 증감(Ⅰ + Ⅱ + Ⅲ)	-1,660,730천원
Ⅴ. 기초의 현금	1,680,739천원
Ⅵ. 기말의 현금	20,009천원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급 수 전 수 : 22,948전　　나. 년 간 생 산 량 : 15,614천㎥

다. 1일 평균생산량 : 43천㎥　　라. 주요건설개량사업 : 단산면 좌석리 상수도 배수관로매설외3건 1,243백만원

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 입		지 출	
제 1 관 상수도사업수익	8,784,470천원	제 1 관 상수도사업비용	7,139,976천원
제 1 항 영 업 수 익	8,654,370 〃	제 1 항 영 업 비 용	6,391,549 〃
제 2 항 영 업 외 수 익	130,100 〃	제 2 항 영 업 외 비 용	132,200 〃
제 3 항 특 별 이 익	0 〃	제 3 항 예 비 비	616,227 〃

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금액 3,361,224천원은 상수도 사업수익액 1,644,494천원, 과년도이월금 및 과년도 영업미수금 1,716,730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수 입		지 출	
제 1 관 자본적수입	12,291,800천원	제 1 관 자본적지출	15,653,024천원
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	0 〃	제 1 항 유형자산취득	14,039,403 〃
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	0 〃	제 2 항 비유동부채상환금	810,000 〃
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	12,291,800 〃	제 3 항 예 비 비	803,621 〃

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관	항	사 업 명	총 액	년 도	연 할 액
		해 당	없 음		

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사 항	기 간	한 도 액
	해 당 없 음	

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기 채 목 적	한 도 액	기 채 방 법	이 자 율	상 환 방 법
	해 당	없 음		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83,79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2,350,252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8,940천원

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2,068,000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종 류	명 칭	수 량	금 액
		해 당 없 음		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16. 12. 20.

영 주 시 장